

#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社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城北區安岩洞 5 街  
 134-58 ☎ 923-4372

## 營林計劃 운용은 융통성 있게 돼야

### 事業基準年度에 ± 1 年 (3 年) 許容토록

모든 計劃이 樹立된 計劃대로 차질없이 수행이 된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나 急變하는 時代의 狀況과 個人事情 등 제반 여건의 變化로 말미암아 計劃대로 꼭 추진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허다히 많게 마련이다.

특히 林業에서의 营林計劃은 長期計劃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다시 세운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营林計劃대로 꼭 執行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은 것이다.

예를들면 营林計劃上 年次別로 事業種別 規模가 明示되지만 여러가지 個人事情등으로 꼭 計劃대로 해당년도에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발생하고 있다.

즉 당해년도의 자금사정, 長期海外出張등으로 長期間 공백기간이 생길수도 있고 또 間伐材의 需給處物色등으로 꼭 당해년도에 하지 못하고 늦을수도 또 빠를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計劃期間보다 1 ~ 2 年의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林業이 本來 宿命的으로 長期的이라는 것, 을 감안해 볼때 그리 크게 無理가 되어른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現實은 當該年度에 施行을 하지 못할 경우 既存 营林計劃을 修正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하여 時間的으로나 經濟的으로도 많은 不利益이 따르게 마련이다.

요즈음 일선 市郡에서 营林計劃을 修正해본 經驗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수 있었겠지만 하루 이틀에 끝나지도 않으려니와 대부분의 산주가 자력으로 할수 없으니 자연히 山組등을 통하여樹立하게 되므로 別途의 手數料도 들게 마련이다.

本誌는 이러한 不合理點을 改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即, 营林計劃上 年度를 基準年度로 보고 그 基準年度에서 ± 1 年 정도에서는 营林計劃의 修正 없이 申告만으로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基準年度에서 1년간 앞당겨하거나 1년뒤에도 할 수 있도록 된다면 즉 3年間안에 할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면 이에 따른 民願(怨)의 節減과 行政簡素化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確信한다.

다만 主伐收穫期만은 木材需給計劃上의 문제 更新의 경우 苗木需給上의 事前調節이 必要한 點 등을 감안하여 主伐인 경우는 당분간은 제외시켜도 무방하다.

## 林木地上權者도 山林所有者 概念에 포함시켜야

또 이기회에 한가지 부연하여 논하고 싶은 것은 山林에 地上權設定者(임야소유자)와 地上權者(林木所有者)가 分離區分되었을 경우 營林計劃樹立(變更包含)에 山主(지상권설정자)의 同意가 꼭 必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本會는 傘下會員으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山林廳을 통하여 有權解釋을 求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산림청에 질의를 행한바 있고 두어차례 문서가 상호 조복된바 있으나 그 답신은 “산림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할 것임”하는 原則論과 “私有林의 경영과 관리의 책임은 산림소유자에 있으므로 營林計劃의 작성과 인가신청도 산림소유자가 함이 原則임”이라고 原則論만 되풀이하여 회신되었다.

이를 놓고 볼때 本會로서는 산림법제 8조에서 산림소유자에게 營林計劃作成義務를 부과한 것을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다만 林野所有主와 地上權者가 区分分離되었을 경우에 꼭 山主의 同意가 必要한 것인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한것에 대하여 明示的解석없이 原則論의 달변만 거듭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산림소유자가 함이 원칙임”하는 것은 원칙은 그러나 그렇게 아니할수도 있다는 默示的 내용을 包含한 말이 아닌지? 아니면 林木地上權者는 아예 營林計劃作成申請資格이 없다는 말인지 좀 아리송하다.

산림법제 8조에서 “산림소유자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한것은 “營林計劃은 山林所有主가 作成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과는 그 法意가 달라서 營林計劃이 重要事案이지 그 作成하는 作成主體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重要事案은 아닌 것이다. 만약 누가 作成하느냐 하는 作成主體가 主要事案이었다면 後者대로 “營林計劃은 山林所有主가 作成해야 한다”로 해야 마땅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山林을 經營目的으로 地上權을 양도받았음으로 실제 營林計劃을 집행 실행하는 主體는 地上權者이지 土地所有主가 아님으로 광의적으로 地上權者도 山林所有者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保護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혹자는 林道施設등 山地를 훼손할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山主의 동의를 求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산지를 훼손하게 될 事案이 發生하게 될때만 山主의 同意를 얻도록 해도 무방한 것이며 또 굳이 산림법이 아니더라도 민법제 279조(지상권리 내용)에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 목적 범위내에서 土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등 그외에도 지상권자의 보호규정이 많이 있는터에 林木地上權者가 營林計劃 정도를 단독으로 작성(토지소유주의 동의없이)신청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制度나 規定自體를 是正해 주기를 促求하는 바이다.

# 石材產業育成 山林廳에서 管掌해야

## - 石材業界 建議 -

全國石材業界를 代表하는 韓國輸出石材生產業組合(理事長; 金俊敬)과 韓國石材品工業協同組合(理事長; 金永鎮)은 지난 9月中旬頃에 經濟企劃院을 비롯한 政府主要有關部處에 현재 진행중인 動資部山林廳間의 石材所管紛爭을 즉각 中止해 주도록 要求하고 석재 산업육성은 山林廳에서 주관하여 발전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로써 지난 3년여에 걸쳐 지루하게 끌어오던 石材所管紛爭은 早期 終結이 예상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지난 '87.9.4 開催된 全國石材業界代表者會議의 議決을 거쳐 確定된 同 建議書에서 業界側은 石材所管紛爭이 長期化됨에 따라 政府의 無支援, 無對策이 계속되고 있어 全體石材業界가 심각한 停滯狀態에 있음을 想起시키고 業界 및 官界 모두에게 有害無益한 所管紛爭을 現段階에서 終結토록 政府關係部處에 強力히 促求하였다.

특히 所管紛爭 解決策의 일환으로 最近 經濟企劃院 主管下에 舉論되고 있는 部處間石材業務 分擔方案은 行政便宜爲主의 非現實的 發想임을 指摘하고 石材產業에 관한 政府施策은 그 직접적 利害當事者인 石材業界의 意見을 尊重하여 決定되어야 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石材業界의 集約된 意見임을 強調한 本 建議書는 3個項의 對政府建議事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主要內容은

첫째, 石材業界에 심각한 被害를 유발하는 石材所管紛爭은 이 時點에서一切 中止해 줄 것.

둘째, 全體石材業界의 均衡發展을 위축시킬石材業務의 部處間 分擔處理方案은 그 意圖가 어디 있던 간에 즉각 撤回할 것.

세째, 紛爭解決을 어렵게 하는 動資部石材產業法(案)을撤回하고 石材產業育成業務는 山林廳에서 一括管掌하여 山林法改正으로 推進해 줄것 等으로서

이에따라 그동안 뜻있는 人士들로부터 不必要한 行政力浪費로 지탄받아 오던 石材所管紛爭은 급속히 終結局面에 突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動資部에서는 '85年度 同組合에서 提出한 獨立法制定建議를 이유로 石材產業法案을 마련하고 所管問題를 提起하였는데 이제 다시 같은組合에서 그撤回要求와 함께 山林廳主管에 의한石材產業育成을 正式으로 建議하므로서 所管紛爭을 계속할 名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建 議 背 景

이제까지 石材所管紛爭을 觀望해 왔고 動資部 腹案을 은근히 後援까지 해왔던石材業界가 이처럼 正反對의 態度를 취하고 나선데는 그동안의 紛爭過程에 대한 나름대로의 判斷과 狀況認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6.6月 動資部의 石材產業法 試案이 發表된 이후 相當期間 業界에서는 자신들이 요청한 獨立法이 制定된다는 점에서 무조건 이를 환영하였지만 當時 그 法案自體를 通讀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法案이 内포하고 있는 問題點을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時日이 경과하면서 石材產業法案에 대한 部處間의 異見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法案自體가 育成보다는 規制爲主의 法案임이 알려지면서 石材業界는 實益이 없는 法으로 등을 둘리게 되었다.

一例로 採石을 할 경우 現行 山林法에서는 採石許可만 받으면 足하지만 石材產業法案에 의한 경우는 採石許可—採石權設定許可—登錄—採石業許可—採取計劃認可—安全規定承認—山林毀損許可등 實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서 採石作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난 '87.7.21 自然保全協會, 韓國林學會, 韓國造景學會등 14個團體에서 共同建議한 石材產業法 撤回要求와 같이 石材產業法案 自體가 各界的 強力한 反對輿論에 밀리고 있고 특히 政治·社會的收容與件上 制定可能性조차 회박해짐에 따라 業界로서는 스스로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所管紛爭의 早期終結을 위해서도 그 撤回要求가 最善策으로 採擇되었을 것이다.

石材業界의 宿願事業은 이번 建議書에서도 提示되었듯이 ①採石期間 長期化 ②採石權 認定 ③各種規制措置 緩和 ④育成資金支援으로서 이를 사항은 이미 山林法 改正案에 反映되어 있고 山林廳에서充分히 소화할 수 있는 事案이므로 業界에서 더이상 動資部에 연연할 必要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실제 山林廳은 이번 石材所管紛爭을 계기로 과거의 소극적 자세에서 완전히 탈피, 最近 石材產業育成5個年計劃을樹立하고 許可期間 長期化, 規制措置緩和등을 山林法下位法令인 施行規則에 신속히 反映하는 등 業界의 不滿을 능동적으로 해소시켜 왔다.

이제 남은 문제는 動資部가 所管紛爭에서 하루빨리 손을 떼어 山林廳으로 하여금 名實共의 石材產業 育成化를 위한 施策을 펴나갈수 있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 “약효만점·가격만족”

## 좋은 제초제 근사미의 사용자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뿌리를 뽑는것보다 더 확실한 제초효과로 널리 알려진 근사미(글라신액제)  
의 가격이 싸졌습니다. 이제 사용자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 근사미  
(글라신액제)를 사용하여 골치아픈 잡초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제작 공장은 일본 후리카사 일렉트리시티사입니다.  
**글라신 액제 근사미.**

### 근사미(글라신액제)의 특징

1. 잡초의 잎에 들은 악성분이 줄기를 타고 내려가 뿌리까지 말려 죽입니다.
2. 잡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땅에 떨어진 악성분은 즉시 약효가 없어지므로 토양이나 작물에 안전합니다.

4. 과목이나 임목의 목질부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5. 약효가 서서히, 그러나 틀림없이 나타나는 이행성 제초제입니다.

※ 지금 곧 가까운 농약살에 문의하십시오.

**몬산토 코리아(株)서울支店**

우편번호 100 서울·중구 경동 3-7 성공회빌딩, 전화: 736-2681~3 TELEX: K 27379

# 篤林家의 提言

本稿는 지난 7.20 ~ 23 까지 3 박 4 일간 林業研修院에서 實施한 篤林家班 特別教育時에 分任討議에서 論議되었던 사항을 이규현 모범독립가가 資料를 정리하여 보내왔다. 이규현 독립가에게 감사드리며 정책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편집자 —

區 分	現 惡 況	問 題 點	改 善 方 向
○ 장기수 조림	○ 2년생 ha당 3,000 본 식재	○ 속아내기 및 간벌에 부담가중	○ 수종별 식재 밀도 재조정 ○ ha당 1,500 ~ 2,000 본 (단, 토질을 고려)
○ 영림계획	○ 복합영림계획 작성 능력 부족 ○ 단일 수종으로 편리 한 방법으로 권장 ○ 산조가 대집행	○ 산주 사기 저하 ○ 임업기술지도원 자질 부족 ○ 부동산 투기업자 난무 ○ 통제기능 발휘 곤난 ○ 정보수집 및 판단곤란 ○ 산주 영림계획 작성 능력전무 — 산조작성 형식화	○ 혼효림 유도 — 관상수 포함 ○ 영림계획 작성비 국고부담 ○ 적극적 기술지도
○ 치산녹화 10년계획	○ 정부의 일방적 계획 으로 정책결정 ○ 리기다, 낙엽송, 잣 나무 일변도 조림	○ 산주 독립가 등 의견 수렴없이 시행착오 유 발 ○ 치산녹화 위주로 기후 토질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조림 ○ 산주의 실태를 파악치 못한 갈등 유발	○ 장기개발계획 및 주요정책 결 정은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 ○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 혼농 임업으로 유도 ○ 소규모 단지화로 휴양분위기 조성
○ 국유림의 분 수계약 확대	○ 불요존 국유림과 지 방자치단체 소유림에 한하여 분수계약 장 려 · 분수비율 : 9 : 1 · 계약기간 : 30년		○ 요존국유림까지 확대 실시 ○ 휴양임업 권장 ○ 임지내 교육시설 관리마사 등 으로 통나무집 건축 허용 ○ 임간학교 적극권장

區 分	現 態 況	問 題 點	改 善 方 向
○ 유통구조개선	○ 무한정 수입개방으로 국내재 생산자 위축 ○ 소경재 용도개발 전무	○ 국내재 생산의욕 상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 계기능 부족으로 소경 재 낭비 ○ 가격동향 정보 부족	○ 외제수입에 부가세 인상으로 수 입억제책 강구 ○ 과거 포퓰러와 같이 잡목을 수 종별로 용도를 고시 ○ 생산자 소비자간에 연계기능 강구
○ 보안림, 공원 림의 무육관리	○ 보안림 및 공원림에 대한 각종 규제 과다	○ 순수 무육관리를 위한 시업의 곤란 ○ 보안림 공원림 등에 대한 규제	○ 순수 무육관리를 위한 시업은 규제완화로 시업이 용이토록 ○ 규제림에 대한 국가보상책 강구
○ 솔잎 흑파리 피해지역	○ 묘목대금 산주 부담	○ 산주 부담능력 부족 ○ 피해목벌채도 벌채계 획량 부족으로 벌채치 못함 ○ 화임기간의 장기로 지 속적인 육림 곤란 ○ 단순림조성으로 병충해 예방문제	○ 피해지역 조림은 국가전액 보조 조림 ○ 피해목은 벌채계획량에 관계없 이 우선 벌채 ○ 관상수 흔효식재로 흔호림 유도 (느티나무, 자작, 몰푸레 등)
○ 산림소득증대	○ 과거 녹화위주 조림 ○ 권역별로 단일 수종 식재 ○ 개발기금 부족 ○ 임업기술지도 부족	○ 단순림조성으로 병충해 예방문제 ○ 임업기술 지도원 부족 ○ 자부담 능력부족 ○ 지방비 부담 능력부족	○ 약초, 더덕등 임간경작으로 복 합 임업으로 소득증대 ○ 상류수원의 수세 산주에 환원 ○ 국고보조율 인상 ○ 독립가에 우선 보조
○ 임도설치	○ 국고보조 40 % 지방비 40 % 자부담 20 %		
○ 조 세	○ 상속세 최득세 양도세	○ 조세부담 능력부족	○ 모든 세제 감면 (공익기능 고려)
○ 임업후계자	○ 농어촌 후계자만 육 성	○ 임업의 장기성 ○ 공익기능이 큰점을 인 식하지 못하고 있다	○ 임업후계자도 일반 농어촌 후계 자 못지않는 그 이상의 대우로 육성
○ 직장별 조림단 지 조성	○ 조림에 대한 인식 부족	○ 일선 시군 및 조합원 산림 상담역 불친절 ○ 특수충하고만 밀착	○ 직장별로 조림단지 조성 유도 • 자연 학습장 제공 • 휴양림 제공 • 정서순화교육 ○ 무사안일 공무원 및 조합원 도태

## 示範山林經營團地 指定

산림청은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단지화된 篤林家 소유산림을 “示範山林經營團地”로 지정하여 집중개발 지원을 통해 산림경영의 실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변 산주들에게 산림경영기술을 전파시켜 사유림 산주의 인식전환과 山林開發投資를 유발시켜 나가고자 그동안 지정단지 관리지침을 마련, 예정지를 선정하여 왔던바 각도별 지정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 示範山林經營團地 指定現況

도 별	산림소유자	산림소재지	면적	수종	단지특징
경기	이용환	가평, 북면, 목동	383 ha	잣나무 낙엽송	· 경제수조림단지 · 잣수확에 의한 소득증대 · 휴양림 지정개발 적지
강원	김기봉	여주, 금사, 주록	140	낙엽송 잣나무	· 경제수조림단지 · 휴양림 개발적지
강원	정묘수	홍천, 두촌, 원동	274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 우량임분조성
	이태성	영월, 주천, 도천	127	잣나무 낙엽송	· 우량임분조성
충북	김창수	청원, 가덕, 내암	347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밤나무 현사시	· 우량임분조성 · 보속생산가능
	김기창	진천, 초평, 영구	138	낙엽송 잣나무 밤나무	· 경제수조림단지 · 표고재배에 의한 소득증대
충남	류승열	금산, 진산, 북산	168	낙엽송 리기다 잣나무	· 치수임분으로 낙엽송 단벌 기 밀식조림
	한희동	대덕, 산내, 남월	92	낙엽송 밤나무 잣나무 리기다 활엽수	· 도시근교 휴양림적지

도 별	산림소유자	산림소재지	면적	수종	단지특징
전 북	백동기	완주, 상관, 용암	282 ha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리기다 느티나무 천연림보육	· 경제수 조림단지로 우량 임분조성
	김한태	임실, 성수, 성수	421	낙엽송 리기다 천연림보육	· 천연림 활엽수 보육 · 표고재배 · 임간학교시설
전 남	김기운	강진, 칠양, 명주	240	편백 삼나무 테다 리기다 해송	· 경제수 조림단지로 우량 임분조성 · 임도에 의한 경영관리 가능
	김병희	장성, 서남, 모암	236	편백 삼나무 리기다 낙엽송 테다 잣나무	· 연접된 독립가 산림을 1 개단지로 통합 지정 · 우량임분조성
경 북	정병섭	장성, 서남, 모암	237	편백 삼나무 리기테다 리기다 잣나무	· 우량임분조성
	이상섭	장성, 북하, 월성	233	편백 삼나무 해송	· 우량임분조성 · 경제수조림단지로 우량임 분조성
경 북	박창환	청송, 안덕, 신성	404	낙엽송 오동나무 잣나무 이태리포플라	· 낙엽송 조림 및 우량활엽 단지

도 별	산림소유자	산 림 소 재 지	면 적	수 종	단 지 특 징
경 북	양 한 기	상주, 화북, 동관	247 ha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 경제수조림단지로 우량임 분조성
	박 찬 국	문경, 문경, 각서		낙엽송 밤나무	• 낙엽송조림 및 우량활집 단지
경 남	이 규 원	하동, 화개, 정금	190	낙엽송 잣나무	• 경제수조림단지로 우량임 분조성
	신 덕 범 박 조 영	거창, 고제, 개명 "		낙엽송 잣나무	• 연접된 독립가 산림을 통합 1개 단지로 지정 • 경제수 우량임분조성

## 88년도 농촌임산연료수급계획

산림청은 '88년도 농촌 임산연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농촌 임산연료 수급계획을 수립, 각 시도에 지시하였다.

산림청이 밝힌 '88년도 농촌 임산연료 수급계획에 의하면 임산물 연료사용 총대상 1,742천가구에 임산연료 소요량이 4,210㎘으로서 공급계획 내용을 보면 산림부산물에서 2,787㎘, 농업부산물에서 1,823천㎘ 아궁이 개량등으로 74천㎘을 절약하여 공급키로 하였으며 수급계획기간은 1987.10.1일부터 1988.9.30일까지로 하였다.

이번에 산림청이 밝힌 88년도 농촌 임산연료수급계획은 매년 770천㎘의 수급 감소 추세로서 '84년도와 비교하면 임산연료 사용가구 538천가구가 (24%), 임산연료의 사용전환으로 감소되어 임산연료 소요량은 무려 3,853천㎘나 (52%) 감소되었는 바 이는 임산연료 사용농가의 타계연료 대체로 인하여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육림으로 자원조성 앞당기자**

**육림주간 11. 7 ~ 11. 13**

## 新品种紹介

### ① 현사시 3호, 4호

현사시 第1號는 은백양 (*P. alba*) 과 수원사시 (*P. glandulosa*) 의 第1代 雜種이며 2號는 이태리에서 花粉을 導入하여 우리나라에 土着化된 은백양에 교잡하여 얻은 次代苗中에서 우수한 개체를 골라 다시 수원사시와 交雜한 것이고, 3號는 1號中에서 우수개체를 選拔한 단일 크론이다.

4號는 4크론 ( 72-9, 72-16, 72-30, 72-31 ) 으로 구성되었으며 2號中에서 選拔한 것이다. 생김새로서는 어렸을 때의 잎은 卵形, 成熟葉의 경우는 卵形, 혹은 능형이며 葉底는 平底, 또는 圓底이고 腺點이 있으며 일 뒷면에 백색의 털이 밀생한다.

樹皮는 1號와 3號에서는 밝은 灰色을 띠며 2號와 4號는 연한 초록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樹冠幅은 이태리 포플러 보다 작으나 양황철나무 보다는 큰것이 특징이며 가지 굽기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生長은 현사시 1, 2號에 비하여 1.2 ~ 1.4 배의 재적 생장을 기할 수 있으며 樹幹이 通直하고 耐病性 및 耐寒性이 强하다.

適地로서는 粘質土가 많이 섞인 微砂質 土壤이 좋으며 土深 ( 30 cm 以上 ) 이 깊은 산록부나 계곡부가 좋고 산성토양에도 잘 견딘다.

用途로는 성냥, 젓가락 스플꼬지 펄프 合板, 포장재등 다양하다.

### ② 양황철 나무 (*Populus nigra X. p. Max*)

1983년에 개발된 양버들 (*P. nigra*) 와 황철나무 (*P. maximowiczii*) 의 제1대 교잡종이다. 生長은 在來 이태리 포플러 (*P. euramericana*, I-476) 보다 1.4 배 이상 재적 생장이 가능하다. 잎은 廣 타원형 혹은 능형이며 葉底는 圓底이다 아랫면에 털은 없으나 幼令葉에서는 약간 흰빛을 띤다. 樹皮는 暗灰色 혹은 灰色이며 皮目은 세로로 갈라진다.

樹冠은 가지가 양버들을 닮아 비교적 錐角으로 발생하여 樹冠幅이 좁으며 樹幹은 대단히 通直하고 아름다워 街路樹로도 적합하다.

適地는 砂質土가 아닌 土深이 깊고 ( 30 cm 以上 ) 粘質이 섞인 肥沃한 平地 혹은 5° 以下의 낮은 경사지, 가로변, 마을 주변의 공한지가 적당하다.

耐寒性이 强하나 耐虫性 ( 미류 굴나방, 박쥐나방 ) 은 약한 편이다.

펄프 수율이 높고 표백이 잘되어 펄프재로 적합하며 성냥, 젓가락, 스플꼬지, 合板 포장재 등 널리 이용할 수 있다. ( 자료 : 임목육종연구소 盧義來 博士 提供 )

이 팝 나 무

이팝나무는 눈부시게 흰꽃잎때문에 흰옷을 즐겨입던 우리선조들이 가까이 심고 아끼던 나무다.

보리고개가 시작되는 5~6월에 피는 순백색의 이꽃은 쌀밥을 고봉으로 담은듯한 모습으로 무리지어 피어나 이팝나무라 불렀다고 한다.

때문에 이꽃이 나무전체를 뒤덮으면서 잘 피면 그해 농사는 풍년이 들고 시름시름 피면 흥년이 든다고 우리선조들은 믿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西歐에서도 「여름에 하얀눈이 덮인나무」라 하여 귀한 관상수로 많이 심는다.

이 나무 이름의 語源은 立夏, 즉 여름에 들어서면서 꽃이핀다 하여 불여진 이름이란 說이 있으나 입쌀로 지은밥을 「이밥」으로 부르는 咸鏡道지방의 방언에서 유래됐다는 說이 더 유력하다.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순박한 흰꽃은 개화기간이 16~20일가량 되어 감상할 수 있는 기간이 길뿐 아니라 은은한 향기를 품어 고급정원수로서도 손색이 없다.

꽃은 5~6월, 여름의 문턱에 들어설무렵 개나리와 같이 네갈래로 갈라져 핀다.

높이 20m, 직경 1m의 큰키나무이며 잎은 감나무와 비슷하여 가장자리가 멋잇하고 두꺼워 무더운여름 시원한 緑陰을 만들어 준다.

특히 어릴때부터 黃褐色을 띠며 자라는 樹皮는 色感도 좋고 낙엽이 지고 흰눈이 가지를 덮으면 노란줄기와 묘한 조화를 이뤄 한폭의 그림같은 雪花를 만든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日本, 中國등지에 분포하며 耐寒性이 강하여 영하 40도의 강추위속에서도 동사하지 않는다.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며 열분에 견디는 힘도 강해 해변가의 방풍림으로서도 활용할수 있다. 播木은 거의 불가능하며 種子에 의해서만 번식이 가능하다.

種子는 二重休眠性이 있어 發芽하기까지는 2년이 걸린다.

가을에 큰콩과 같이 碧色으로 익는 열매를 채취, 모래와 3대 1비율로 섞어 2년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봄에 과종하면 새싹이 돋아난다.

당년에는 10cm밖에 자라지 못하나 키가 2m가량 자라면서 꽃이 피기 시작한다. 잔뿌리가 많아 옮겨 심어도 잘 자라며 또한 병충해가 전혀 없어 정원수로 심을경우 별도로 손질을 해줄 필요가 없다.

濟州道와 남쪽섬에 귀하게 자라고 있는 긴잎 이팝나무는 韓國特產이다.

물푸레나무과이며 漢字로는 六道木 立夏木이라고 쓴다.

이 나무는 꽃나무 가로수가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가로수로 적격이지만 번식이 어려워 아직까지 본격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료제공 林業試驗場 趙武衍 연구관)

## 林業界消息

○ 養苗技術 세미나開催 : (社)韓國養苗協會(會長:金命源)는 10.15 ~

16까지 이틀간에 걸쳐 전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養苗技術세미나 開催 예정

○ 育林週間 設定 : 山林廳은 11.7 ~ 11.13 까지를 育林週間으로 設定하고 沔國民的 育林運動을 展開  
키로 하는 한편 附帶行事로 青少年 育林祭 심포지움, 연찬회 등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

- 육림의 날 행사 : 11.7 (토) 임업시험장 광릉 시험림에서
- 연찬회 : 10.30 (금) 평창군 봉평협업 경영 시범지역에서
- 청소년 육림제 및 심포지움 개최 : 11.1 (일) 광릉 시험림 및 산림박물관에서,

## 會員動靜

- 本會 北美州 林業觀察團員 11名이 18일간 여정으로 20일 출국예정
- 移徙 : 本會 專務理事 崔東均 구로구 고척1동 92-6 장미APT 2동 405호로 이사  
686-0943

## 會員公知事項

- 山經콜프會員모집 : 會員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각종 정보교환등을 위한 콜프회원(假稱: 山經콜프會)을 모집코자 하오니 본회 회원(法人會員은 部長級 以上 간부)으로서 加入을 希望하는 會員께서는 본회로 연락하시기 바람.
- 會員紙上 福德房 : 本會 會員으로서 山林 買賣를 希望하는 會員께서는 本會로 연락하시기 바람.
- 本誌原稿모집 : 새로운 임업기술정보, 산림소득원 소개, 수기, 회원동정, 이사 전화번호 변경등 원고를 언제든지 제한없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協會費納付 : 일부 회원께서 협회비 미납이 있어 운영상 지장이 있어오니 미납회원께서는 납입바랍니다.

## 協會費納入案內

- |      |            |                   |
|------|------------|-------------------|
| 計座番號 | ○ 서울신탁은행 : | 19501-84009872    |
|      | ○ 농협중앙회 :  | 001-01-025926     |
|      | ○ 국민은행 :   | 093-24-0025-624   |
|      | ○ 우체국 :    | 011809-0014780-12 |